

건설제도 알리미 2017. 03

본 자료는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개정된 건설관련
주요제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.



1 산업안전보건 규칙 개정 · 시행('17.3.3)

-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풍속기준 강화(제37조제2항)
 - 작업중지 풍속 기준을 순간 풍속 초당 20미터 초과에서 초당 15미터 초과로 강화
- 화재로 대형피해 발생 우려되는 작업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(제241조)
 - 용접 등 작업으로 화재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화
 - ※ 화재감시자 배치 작업 장소
 - 연면적 15,000㎡ 이상인 건축물 건설·개조공사의 지하장소
 - 연면적 15,000㎡ 이상인 냉동·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, 단열공사
 -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인접 장소
- 근로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석면폐기물 처리 작업의 확대(제497조의3제1항)
 - (개정전)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의 처리 작업
 - (개정) 석면 1%이상 함유한 폐기물(제거작업 등에 사용한 비닐시트·방진마스크·작업복 등 포함)

●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성 강화

- 밀폐공간 개념에 질식 추가 등 ‘용어정의’ 개정(제618조 및 별표 18)

구 분	개정전	개정
밀폐공간	산소결핍, 화재,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	산소결핍, <u>질식</u> , 화재,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
유해가스	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·황화수소 등	탄산가스· <u>일산화탄소</u> ·황화수소 등
적정공기	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.5퍼센트 미만, 탄산가스의 농도가 1.5퍼센트 미만,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	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.5퍼센트 미만, 탄산가스의 농도가 1.5퍼센트 미만, <u>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</u> , 황화수소의 농도가 10 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

- 밀폐공간 작업 시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구체화(제620조제2항, 제621조 각각 신설)
 -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결과 등을 검토하여 안전한 경우에만 작업 실시하는 절차 등 구체적, 체계적으로 정비
- 밀폐공간 작업 시 출입금지 표지(별지 제5호 서식 신설)
 - 밀폐공간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출입금지 표지 서식 규정
- 밀폐공간 작업 시 착용하는 호흡보호구 명확화(제620조제5호)
 - (현 행) ‘공기호흡기’나 ‘송기마스크’ “등”의 착용과 관리
→ (개정안) ‘송기마스크’ 또는 ‘공기호흡기’의 착용과 관리

2**「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」
개정 · 시행(’17.3.7)**

- 평가 및 적용시기 변경(제13조 및 제15조제1항)

현 행	개 정
○ 평가서류 제출기한 : 2월 15일	○ 3월 15일
○ 결과 발표일 : 5월말	○ 6월말

- 우대사항 적용기간 변경(제16조제2항)

현 행	개 정
○ PQ심사 때 : 평가결과 발표일 부터 다음년도 평가결과 발표일 전일까지	○ 평가결과 발표 시 정한 기간

- 제출서류 추가(제15조제1항 및 별지12호)

현 행	개 정
< 신 설 >	○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(별지 12호 서식)

3 **건설산업기본법 개정(’17.3.21) · 시행(’17.9.22)**

-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(제83조제13호)

- 담합횟수(3회) 산정기간 : (현행) 3년 → (개정) 9년

-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

· (현행) 입찰담합(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)

→ (개정) 입찰담합(8호), 가격담합(1호), 물량배분담합(3호)

- 건축물 표지판에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게시(제42조제2항 단서 신설)
 - 건축공사 완공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
-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, 건축주의 공모행위 금지 및 처벌 신설(제13조, 제21조, 제95조의2)
 - 불법대여자에 대한 재등록 결격기간을 연장(5년 → 10년)하고, 형사처벌 강화(3년·3천만원 → 5년·5천만원)
 -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(3년·3천만원 → 5년·5천만원)
 - 불법대여 공모 건축주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(5년·5천만원)
- 공공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 부과(제28조의2)
 - 국가, 지자체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직접시공계획을 통보 받은 경우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
 - ※ 다만, 관계 법령에 따라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음

【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('17.9.22)부터 시행】

- i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및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
- ii)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은 법 시행 후 해당 사유로 최초 등록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
- iii) 직접시공에 관한 조항은 법 시행 후 최초 건설공사 도급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
- iv) 내진등급 표시에 관한 조항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완공된 건설공사부터 적용